

의안번호	2212084
의 퇴 인	배준영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.
추계번호	25F426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사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시, 2026년 1,227.1억원, 2030년 90.1억원 등 2026~2030년까지 5년간 총 3,954.2억원(연평균 790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됨에 따라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3,681.4억원(연평균 1,227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단, 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됨에 따라 2028~2030년까지 3년간 총 272.8억원(연평균 90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소 계 (안 제85조의2)	-1,227.1	-1,227.1	-1,318.1	-90.9	-90.9	-3,954.2	-790.8
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5조의2제1항제1호·제3호)	-1,187.2	-1,187.2	-1,187.2			-3,561.6	-1,187.2
사업용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5조의2제1항제4호)			-90.9	-90.9	-90.9	-272.8	-90.9
지방공단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5조의2제2항)	-4.7	-4.7	-4.7			-14.2	-4.7
지방출자출연기관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5조의2제3항)	-35.2	-35.2	-35.2			-105.6	-35.2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5조의2 제1항 (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사업용 부동산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 - 국가 등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: (현행) 2027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2	안 제85조의2 제2항 (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지방공단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3	안 제85조의2 제3항 (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지방출자·출연기관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85조의2 제1항 (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85조의2 제2항 (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)	○	
3	안 제85조의2 제3항 (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가정
 - 단, 제85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(안 제85조의2제1항) 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지방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1,142.5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지방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2023년 감면실적인 44.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－ 2023년 제1항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인 135.6억원에서 제4호에 의한 재산세 감면실적인 90.9억원을 제외한 금액
 - 지방공기업의 택시재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부동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23년 감면실적인 90.9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－ 동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 통계가 사업용 부동산과 국가 등 무상 귀속 부동산으로 구분된 통계가 2023년 감면실적 확인 가능
- (안 제85조의2제2항) 지방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지방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0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지방공단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4.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(안 제85조의2제3항) 지방출자·출연기관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지방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

연평균 감면액 21.3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- 지방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13.9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85조의2제1항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□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·재산세를 감면

-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% 감면
 - 단,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를 100% 감면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7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
[표 2]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주요 내용

구분	감면율	적용기한
사업용 부동산	(취득세) 50%, (재산세) 50%	2025.12.31
사업용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시설물 등	(재산세) 100%	2027.12.31

□ (감면실적) 2023년 기준 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취득세 1,057.3억원, 재산세 135.6억원 수준

-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1,346.7억원에서 2023년 1,057.3억원으로 감소
-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1년 147.0억원에서 2023년 135.6억원으로 감소

[표 3] 지방공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소계	1,493.8	1,172.4	1,192.9
－ 취득세	1,346.7	1,023.6	1,057.3
－ 재산세	147.0	148.9	135.6
(제4호)			(90.9)

주: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4호에 대한 감면실적은 작성 시 2023년만 확인 가능하여 2023년 감면실적인 90.9억원을 활용하여 분석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지방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1,142.5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2023년 감면실적인 44.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－ 2023년 제1항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인 135.6억원에서 제4호에 의한 재산세 감면실적인 90.9억원을 제외한 금액
 - 지방공기업의 택시재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부동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23년 감면실적인 90.9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－ 동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 통계가 사업용 부동산과 국가 등 무상 귀속 부동산으로 구분된 통계가 2023년 감면실적 확인 가능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6년 1,187.2억원, 2030년 90.9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,834.4억원(연평균 766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6~2028년간 3년간 총 3,561.6억원(연평균 1,187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지방공기업이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8~2030년간 3년간 총 272.8억원(연평균 90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: 지방세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(안 제85조의2)		-1,187.2	-1,187.2	-1,278.1	-90.9	-90.9	-3,834.4	-766.9
사업용 부동산	취득세	-1,142.5	-1,142.5	-1,142.5			-3,427.6	-1,142.5
	재산세	-44.7	-44.7	-44.7			-134.0	-44.7
국가 등에 무상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				-90.9	-90.9	-90.9	-272.8	-90.9

나. 지방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85조의2제2항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·재산세를 감면
 - 지방공사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% 감면
 - 단,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- (감면실적) 2023년 기준 지방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취득세 0.1억원, 재산세 4.6억원 수준
 -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0.09억원에서 2022년 0.02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0.1억원으로 증가
 - 재산세의 경우 2021년 4.5억원에서 2023년 4.6억원으로 소폭 증가

[표 5] 지방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소계	4.63	4.93	4.67
－ 취득세	0.09	0.02	0.10
－ 재산세	4.55	4.91	4.57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□ 지방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
- 지방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0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지방공단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4.6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(3) 추계결과

- ### □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6년 4.74 억원, 2028년 4.74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4.23 억원(연평균 4.7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: 지방세, 2026~2028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소계	-4.74	-4.74	-4.74	-14.23	-4.74
－ 취득세	-0.07	-0.07	-0.07	-0.21	-0.07
－ 재산세	-4.67	-4.67	-4.67	-14.02	-4.67

다. 지방출자·출연기관의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(안 제85조의2제3항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출자·출연기관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·재산세를 감면
 - 지방출자·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% 감면(50% 범위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그 율)
 - 단,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- (감면실적) 2023년 기준 지방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취득세 24.7억원, 재산세 13.6억원 수준
 -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11.3억원에서 2023년 24.7억원으로 증가
 - 재산세의 경우 2021년 15.2억원에서 2022년 12.9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13.6억원으로 소폭 증가

[표 7] 지방출자·출연기관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소계	26.5	40.8	38.4
- 취득세	11.3	27.8	24.7
- 재산세	15.2	12.9	13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지방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지방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21.3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지방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13.9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6년 35.2억원, 2028년 35.2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05.6억원(연평균 35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: 지방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소계	-35.2	-35.2	-35.2	-105.6	-35.2
- 취득세	-21.3	-21.3	-21.3	-63.8	-21.3
- 재산세	-13.9	-13.9	-13.9	-41.8	-13.9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